

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

(주)프리즘투자자문

(주)프리즘투자자문(이하 "회사")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내용을 공시합니다.

I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1.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 - 회사 「내부통제기준」에 따라 그 내용을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정보교류를 차단함.
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「내부통제기준」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류할 수 있음.
2.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.
 -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 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동법 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 -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당사의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
3. 투자자문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.
 -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 - 회사 및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5영업일이 경과한 투자자문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. 단, 회사의 부문별 책임자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
 -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

II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
-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

1. 고유재산운용과 투자자문업
4. 회사와 계열회사
5. 회사와 투자자문상품의 판매회사
6.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

-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- 고유재산 운용 업무 :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자산에 관한 정보
- 투자자문 업무 : 투자자문상품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

Ⅲ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1.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.
2.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는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,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,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3.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.
4.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는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Ⅳ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

1.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
 -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, 법 제85조, 법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등에 따라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구분
 - 대응방안

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승인, 사후보고 등을 통해 점검

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,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한한다.

Ⅴ.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

1. 고객이익의 우선
2. 이해상충문제의 차단
 -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.
 -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

또는 고객의 자산,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.

3. 이해상충의 파악·평가 및 관리 등

-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정보교류 총괄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,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VI.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

-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 총괄부서 : 컴플라이언스 부서
-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 : 컴플라이언스 부서장